제176회 영등포구의회
2013년도 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3. 7. 5.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1. 경 과

의안 제222호로 2013년 6월 24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등 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조례운영의 미비점을 보완·개정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고 필요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의2)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등 상위법에서 명시한 존속기한을 기존 조례에 반영하여 시행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

❍ 주요내용을 보면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여 운용하고, 기한만료 후 존치 필요시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함.

❍ 기금의 효율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운용토록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 밖에 조문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조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음.

관 련 법 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②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